

제235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4 월 8 일

여 수 시 장

2024/04/08



여수시 조례 제2067호

붙임 여수시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공유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2조 중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하고, 제3항 ~ 제6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2조(공유촉진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공유촉진 정책과 공유 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유촉진 담당 국장으로 한다.</p> <p>④ 당연직 위원은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공유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과장)중에서 임명하고,</p>	<p>제10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12조(공유촉진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공유촉진 정책과 공유 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 위원회에서 대행한다.</p> <p>③ ~ ⑥ 삭제</p>

현 행	개 정 안
<p>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수시의회 의원 1명 2. 학계·종교에서 공유와 관련된 경험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중소기업 또는 사회적 경제활동 조직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p>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u>간사는 공유 촉진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u></p>	